

제안사항, 이유

□ 제안 사항

○2014. 4. 8 및 2015. 2. 24 자 노사합의서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조합 및 전 위원장 외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었고, 현재도 관련 소송이 추가 진행중임.

○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손해액을 지급한 바 있고, 앞으로도 추가적인 재판 결과에 따라 이를 이행할 수 밖에 없는 바, 그와 관련하여 정윤모 전 위원장 외 1인에 대해 위 손해와 관련한 책임을 부담시킬 것인지가 문제임.

□ 제안 이유

○당시 노사합의 절차는 정기 임·단협 단체교섭이 아닌, 연중 수시로 진행되는 노사합의 경우는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았던 오랜 기간 동안의 관행에 따른 것이었으며, 합의 취지도 kt의 경영위기 타개, 고용안정 등 조합원 전체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고, 이 노사합의를 통한 개인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○조합간부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조직 자체의 관행적인 행위였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조합간부 개인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음.

○이에 합의 주체인 위원장과 사업지원실장은 당시 관행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였음에도 합의서에 서명하는 직책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혹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향후 노동조합 활동 위축으로 조합원 전체의 이익 침해를 가져올 수 있어 정윤모 전 위원장 외 1인에 대해 조합원총회에서 손해배상 관련 면책의 건에 대한 조합원 총의를 묻고자 함.